

8 교육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시 유의사항

1. 근무성적평정 시 평정자, 확인자 및 조정자

기관명	평정대상자	평정자	확인자	조정자
중·고등학교	일반(보건 포함), 특수 · 사서 · 전문상담 · 영양 · 실기교사	교감	교장	교육국(과)장
	교감	교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특수학교	교사	교감	교장	교육국(과)장
	교감	교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교육지원청	장학사	교육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전문상담순회교사, 교과순회전담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교육국(과)장	교육장	제1부교육감
직속기관	교육연구사	기관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도교육청	장학(교육연구)사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전문상담순회교사, 특수교육순회교사	소속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제1부교육감

* 교장 유고 시 : 교감의 평정자는 교육국(과)장, 교사의 확인자는 교감

* 교감 유고 시 : 교사의 평정자는 교장

2. 「교사 근무성적 평정 상황표」 작성요령

학교명	구 분	전체이원	근평대상	근평제외	수	우	미	양
△△ 고등학교	일반교사	78	62	16	19	25	18	0
	특수교사	0	0	3	0	0	0	0
	사서교사	1	0	1	0	0	0	0
	실기교사	0	0	0	0	0	0	0
	전문상담교사	1	0	1	0	0	0	0
	영양교사	1	0	1	0	0	0	0
합계		84	62	22				
학급수	① 교과교사 정원 (학급수 × 배치기준율) + (수석교사(0.5)) + (증치)	② 보건교사	③ 일반교사 타교복직예정자 (현임제외자)	①+②+③ 일반교사전체인원				
37	74	1	3	78				
정원 특이사항	- 수석교사 1명, 다문화·발달교사·연구학교·교과점담순회·방통고 등 X명 증치 - 인문2학급, 농·공·상업 5학급							
* 근평 제외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제외 대상자의 사유와 기간을 기재하되, 타교복직(귀)예정자이자 근평대상자인 경우도 추가로 기재								
제외 사유-종류별	인원	성명(과목)	기간 - 상세히	기타				
4호파견 육아, 출산휴직 4호파견	1	박파견(역사)	2022.03.01. ~ 2023.02.28.(1년) 2023.03.01. ~ 2025.08.31. 2025.09.01. ~ 2026.02.28.(6개월)	타교복직대상자 (파견 1년 초과)				
동반 or 고용 휴직 (일반 이외) 육아 휴직	2	홍특수(특수) 배상담(전문상담)	2024.03.01. ~ 2026.02.28.(2년) 2025.04.01. ~ 2026.04.30.	특수 전문상담은 원적교로 복귀				
파견 대상자	파견 종류	파견지	파견 기간	근평 대상 여부				
박파견(역사)	교원연수 (4호)	한국교원대, 충남대, 서울대, 경기도교육연수원 등	2022.03.01. ~ 2026.02.28.	대상 아님				
한연구(화학)	교육연구 기관(7호)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연구기관	2025.05.01. ~ 2026.09.30.	대상(2개월 근무)				